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34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심야동물병원 제도 도입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 23.

다. 회 부 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심야동물병원 제도 도입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6(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운영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공공심야동물병원을 관리하는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u>

현행	개정안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¹⁾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동물병원에 지

현행	개정안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u>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u> ⑦ <u>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u>²⁾ <u>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u>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는</u>-----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동물병원이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2) “취소된 자는”을 “취소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개설자는”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최근 상당한 비율의 국민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응급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비율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율(%)	23.7	26.4	27.7	25.9	25.4

※ 주: 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바 통계청과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음

※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도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유형별 동물병원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반려동물진료병원(소동물)	3,567	3,754	3,680	3,728	3,837
산업동물진료병원(대동물)	765	865	960	1,002	1,000
혼합진료병원(소+대동물)	272	272	313	330	340
합 계	4,604	4,891	4,953	5,060	5,17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³⁾이 있음.

3) 데일리벳, “동물 응급의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 이승근”, 2025. 2. 5.
URL: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235843>

【 전국 동물병원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체 (A)	심야병원 (B)	비율 (B/A)
서울	878	904	901	916	931	94	10.1
부산	260	272	270	276	280	27	9.6
대구	177	192	192	199	204	20	9.8
인천	207	212	225	230	242	22	9.1
광주	113	119	125	125	129	11	8.5
대전	106	113	116	112	118	7	5.9
울산	76	76	76	72	78	6	7.7
세종	30	31	32	32	35	2	5.7
경기	1,148	1,230	1,249	1,276	1,307	86	6.6
강원	134	138	144	152	155	5	3.2
충북	131	144	143	158	166	7	4.2
충남	232	248	253	262	275	6	2.2
전북	201	217	217	220	215	5	2.3
전남	168	203	204	211	224	2	0.9
경북	319	344	346	348	353	9	2.5
경남	319	333	342	353	351	9	2.6
제주	105	115	118	118	114	0	0.0
계	4,604	4,891	4,953	5,060	5,177	318	6.1

※ 주: 농식품부는 '24년 이전에는 심야동물병원과 관련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없다고 밝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동물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 】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동물의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영역인지 여부, 공적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현 상황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동물병원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정 대응이 가능⁴⁾하며, 정부의 심야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명절 연휴 운영 동물병원 현황 】

구 분	'23년 설	'23년 추석	'24년 설	'24년 추석	'25년 설
	(9.28.목 ~10.3.화)	(9.28.목 ~10.3.화)	(2.9.금 ~2.12.월)	(9.14.토 ~9.18.수)	(1.27.월 ~1.30.목)
동물병원 수	323개소	600개소	447개소	476개소	536개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서는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도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대형 동물병원 위주로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4)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병원(77,139개소) 중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0.7%(520개소, '23년) 수준인 사람 의료와 비교할 때, 동물 의료는 전체 동물병원(5,177개소) 중 심야 운영하는 곳은 6.1%(318개소, '24년)로 응급상황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참고로 동물병원의 경우 사람 의료와 달리 응급의료에 대한 별도의 지정 기준이 없어, 심야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비교한 것이라는 설명임.